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 >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9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4
2. 조문의 구성체계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목적 규정(안 제1조)	12
(2) 정의 규정(안 제2조)	13
(3) 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7
(4) 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안 제7조)	20
(5)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8조)	23
(6) 실태조사 (안 제9조)	25
(7) 통학비용의 지원 등 (안 제10조)	26
(8) 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	27
(9)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안 제13조)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9.
3.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 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 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2)에서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²⁾, 이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통학환경 특성을 고려한 통학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현황(2026.4.1. 기준)을 살펴보면, 도보·대중교통 통학 취약 지역 또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지역의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하거나 교육청이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26년 예산 기준 2,634억원(교육청 2,244억원, 지방자치단체 3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근거] 참고 (9 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현황(2026.4.1.기준)]

(단위:천원)

시·도	통학지원 세부내역	지원대상	2026년(예산액)	
			교육청	지자체
서울	통학차량(운영비)	도보대중교통 통학 취약 지역 초·중학생	370,210	5,788,440
부산	통학차량(운영비, 안전도우미 인건비)	원거리 통학 초·고등학생	3,592,600	
대구	통학차량(운영비, 안전요원 봉사료)	학교 통폐합 등 원거리 통학 초·중학생	2,430,098	
인천	통학차량(운영비), 생활비 지원	농어촌 등 원거리 통학생 초·중고 학생	18,775,316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생활비 지원	학교 미설치 및 통폐합 휴교 도서지역 학생	362,000	82,000
광주	통학차량(운영비), 교통비 지원	학교 통폐합 및 농촌 원거리 통학생, 이주 배경학생 등	2,541,831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어린이·청소년	2,156,000	5,544,000
세종	통학차량(운영비)	농어촌 통폐합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초·중고학생	1,924,921	150,000
	통학 택시운영	읍·면지역 중·고등학교(11교)	47,000	
경기	통학차량(운영비), 한정면허 순환버스 운영비	교통취약 초·중고 학생	53,861,000	21,601,166
강원	통학차량(운영비)	농어촌, 원거리 초·중학생	11,769,074	
충북	통학차량(운영비), 통학비 지원	초·중 농산촌학교 원거리 학생 등	14,912,020	149,715
충남	통학차량(운영비)	초·읍·면지역 학교 대상, 중·면지역 학교 중 200명 이하)	15,991,776	353,081
	통학비 지원	도서·벽지학교 학생	48,000	
전북	통학차량(운영비) 택시 지원 거주비 지원	농어촌 지역 도서지역 초·중학생	20,828,964	
	택시 지원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1,027,000	2,054,000
전남	통학차량(운영비)	원거리 통학생 또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초·중학생	20,561,576	1,337,468
	통학비 지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구 내 초·중학생	782,340	
경북	통학차량(운영비), 교통비 지원	농어촌 통폐합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초·중고학생	9,245,395	
경남	통학차량(운영비), 교통비 지원	원거리 통학 초·중학생	30,412,080	
제주	통학차량(운영비)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 도심 외곽지 중·고등학생 읍·면지역 고등학생	4,731,870	
	교통비 지원	13세~18세 청소년	8,068,000	1,440,000
	공항소음지역 통학버스	공항소음 피해지역 초·중학생		465,000
계			224,439,071	38,964,870

※ 대전·울산의 경우 2026년 통학 지원 예산액 미편성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소규모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① 교육감의 통학지원 통합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② 통학비용 지원 대상, ③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④ 통학비용의 지원 ⑤ 통학지원 소요비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 특례,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학지원 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도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학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통일적·체계적인 학생 통학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정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학생 통학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여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 통학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학생 통학지원은 지역별 통학환경, 교통여건 및 학교 배치 현황에

따라 지원 수요와 지원 방식이 상이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일률적·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른 통학비용 지원, 학생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은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통학”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이동뿐만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통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통학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한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 학생 분포, 대중교통 접근성, 통학 거리 및 통학수단 등의 차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 단위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표준화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기초로 한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①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통학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고, ② 버스노선 운영 등을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는 개별법 제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 및 지원 내용의 중첩·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 통학 안전사고와 대책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의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 분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은 제정안의 학생통학버스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대규모 시·도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모든 학교의 노선과 계약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행 학교·교육지원청 단위의 탄력적 운영 체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근거]

시도	근거(조례)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7.1.)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통합·정비가 진행 중임.

2.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본칙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조문	주요내용
제1조(목적)	▲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
제2조(정의)	▲ '학교', '학생', '학생통학버스', '통학지원', '통합운영' 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생 통학지원의 예산 지원,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	▲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 특수교육대상자,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학교 통폐합과 신설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으로 함
제8조(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 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조문	주요내용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 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제10조(통학비용의 지원 등)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1조(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제12조(경비의 보조 및 전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업무 협조 요청
부칙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규정(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 제1조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교육감의 통학지원 통합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안 제5조), 통학비용 지원 대상(안 제7조),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8조), 통학비용의 지원(안 제10조), 통학지원 재원 조달 방안(안 제11조 및 제12조) 등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적조항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의 규정(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통학버스”란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학지원”이란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운영”이란 학생통학버스 관련 관리 권한을 관할 교육감이 일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 “학생통학버스”, “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우선, “학교”(안 제2조제1호)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학생”(안 제2조제2호)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³⁾⁴⁾.

3)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 다음으로, “학생통학버스”(안 제2조제3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여 통학지원에 활용되는 차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⁵⁾.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규정함으로써 통학지원 정책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학생통학버스”는 승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버스 형태의 차량을 의미하는 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활용되는 택시 등의 승용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의 규정의 내용과 용어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를 “학생통학차량”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통학”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이동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임. 제정안의 취지가 학생의 등·하교 지원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학의 범위를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4) 시·도 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학교 및 학생 정의규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학생의 등교 및 하교를 위한 이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현장체험 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 다음으로 “통학지원”(안 제2조제4호)은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통학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통합운영”(안 제2조제4호)은 학생통학버스 관련 관리 권한을 관할 교육감이 일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학버스 운영을 교육청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기존 운영 주체와의 역할 분담, 계약 관계 승계 여부, 학교 현장의 운영 자율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다음 각 목의 차량을 말한다.

가.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와 제9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

라.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제정안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통학버스 운영·관리와 관련된 실체적·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의규정에 명시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정안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시·도별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 및 운송 체계 등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대책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의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 분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강원)은 대규모 시·도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모든 학교의 노선과 계약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행 학교·교육지원청 단위의 탄력적 운영 체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학생통학버스 관련 안전 대책 4.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학지원의 기준 및 방법 3.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중단 결정 4. 그 밖에 통학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5조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통합운영계획에는 통학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통학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학생통학버스 관련 안전 대책,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는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통학지원의 기준 및 방법,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의 통학지원 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의 통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 제5조제2항제4호는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학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통학지원의 방식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방식 지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포괄될 수 있도록 “통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⁷⁾에서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사항,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4.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5.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하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생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6.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7. 지형적 여건이나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학이 곤란한 학생 8. 지리적·경제적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교육감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및 지원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7조는 교육감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통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원 대상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의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학교 통폐합 또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등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원거리 통학생, 통학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 대중교통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통학이 곤란한 학생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 또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학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통학지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은 위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학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한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또는 통학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 등은 통학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통학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신설학교 개교 전 임시배치 등 교육행정상의 사유로 통학거리 또는 통학시간이 증가한 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7조제1항제8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을 수 있어 보임.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는 지역의 통학 환경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학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⁸⁾.

- 교육부는 제정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수립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규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경기, 강원)은 제정안 제7조제1항제8호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건의 수용”을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교육청 통학 지원 정책이 지역 민원 해소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8)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6조(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8조는 교육감이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통학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목적과 효용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는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비용, 정보 연계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보체계 구축 필요성, 구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 구축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경기)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낭비, 지방자치단체
교통복지 정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실태조사 (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9조는 교육감이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의 통학 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통학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학생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으로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을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항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실태조사의 목적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통학비용의 지원 등 (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통학비용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권의 지급, 교통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 제10조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현황(2026.4.1. 기준)에 따르면⁹⁾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현황(2026.4.1.기준)] (5페이지)

(8) 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1조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¹⁰⁾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 학생 통학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등 일반적·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초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 학생 분포, 대중교통 접근성, 통학거리 및 통학수단 등의 차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 단위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보통교부금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일반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률에서 직접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보통교부금 산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반영할 경우 전체 교부금 규모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다른 기준 재정수요 항목과의 배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교육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통학지원 비용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단위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지원비”라는 기준재정수요항목에서 지역별 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통학 지원 비용 항목을 산정할 경우 기존 항목과 중복 산정 우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전남)은 지역별 소요 규모와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비”의 기준재정수요 항목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의무 반영 시 다른 필수 교육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첨단 안전장치 탑재 및 보호장구 설치 등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정안 제13조는 교육감이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공 또는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관계 행정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도로·도시계획 및 재정지원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문 의 처
02)6788-5185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등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